

| | | |
|--|---|---|
| 제2026-16호 2026년 2월 27일(금) | 시 보  여수시 | 시 정 지 표 소통화합 열린도시 인재육성 산업도시 문화예술 복지도시 해양관광 휴양도시 기후변화 선도도시 |
|--|---|---|

■ 발행인 : 여수시장 ■ 발행소 : 홍보담당관 / 여수시 시청로 1(학동) ☎ 659-3023 FAX) 659-5803

고 시

- 여수시 고시 제2026-57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신고) 고시
- 여수시 고시 제2026-58호 2026년도 여수시 지적재조사사업 측량·조사 등 위탁 고시

공 고

- 여수시 공고 제2026-684호 여수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 변경(안) 주민 등의 의견청취 열람공고
- 여수시 공고 제2026-693호 거문도항 제2삼호교 건설공사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 여수시 공고 제2026-699호 2025년도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 결과 공고
- 여수시 공고 제2026-706호 전문건설업 폐업 공고 - (유)진남개발
- 여수시 공고 제2026-707호 2026년도 공공산림가꾸기(숲가꾸개틀) 기간제근로자 채용(2차)에 따른 최종합격자 공고

읍·면·동

- 여수시 돌산읍 공고 제2026-10호 2026년 계동유원지 환경정비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

조 례

- 여수시 조례 제2278호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 여수시 조례 제2279호 여수시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여수시 조례 제2280호 여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 여수시 조례 제2281호 여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여수시 조례 제2282호 여수시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여수시 조례 제2283호 여수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
- 여수시 조례 제2284호 여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 | | | | | | | | |
|------------|--|--|--|--|--|--|--|--|
| 회 략 | | | | | | | | |
|------------|--|--|--|--|--|--|--|--|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여수시 고시 제2026 - 57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신고)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 규정에 의거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을 승인(신고)하고 고시합니다.

| 승인 (신고) 번호 | 실시계획 승인 (신고)수리일 | 시 행 자 | | 공사기간 | 점용·사용 장 소 | 사업내용 |
|--------------------------|-----------------------|--------------|------------------|----------------------|-------------------|-----------------------------|
| | | 주 소 | 성 명 | | | |
| 2026-01 ('26. 1. 5.) | '26. 2. 26. | 여수시 시청로 1 | 여수시장 (섬발전지원과) | '26. 2. ~ '26. 5. | 화정면 개도리 화산항 지내 | 화정면 개도 화산항 간이부잔교 설치공사 |

2026. 2. 26.

여 수 시 장

2026년도 여수시 지적재조사사업 측량·조사 등 위탁 고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운영규정」 제7조에 따라 2026년도 여수시 지적재조사사업 측량·조사 등 위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2월 26일

여 수 시 장

1. 책임수행기관: 한국국토정보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 지적재조사대행자: (주)무성종합건설
2. 위탁기간: 2026. 2. 26. ~ 2026. 12. 31.
3. 지적재조사지구 명칭: 율촌 조화득실지구
4. 지적재조사지구 위치 및 면적
-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조화리 581-4번지 일원(350필지, 156,361㎡)
5. 지적재조사 측량·조사 등 위탁업무
 - 가. 지적재조사지구 내·외 경계 확정
 - 나. 토지현황조사 및 토지현황조사서 작성
 - 다. 지적재조사측량 중 경계점 측량 및 필지별 면적산정
 - 라. 경계설정(재설정) 및 임시경계점표지 설치(재설치)
 - 마. 토지소유자와 경계조정 및 협의
 - 바. 지적확정예정조서 작성
 - 사. 경계점표지 설치, 경계확정측량 및 지상경계점등록부 작성
 - 아. 측량성과물 작성 등
6. 문 의: 여수시 민원지적과 지적재조사팀(☎061-659-3331)

여수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 변경(안) 주민 등의 의견청취 열람공고

여수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 변경(안)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하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기한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2. 27.

여 수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도로 결정(변경) 조서

| 구분 | 면적(㎡) | | | | 기능 | 연장(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m) | | | | | | | | |
| 기정 | 소로 | 3 | 1218 | 6 | 국지 도로 | 110 | 소로1-10 (오천동 341-9) | 중로2-34 (오천동 350-7) | 일반 도로 | - | 여수시고시 제2023-372호 ('23. 8.24.) | - |
| 변경 | 소로 | 3 | 1218 | 6~7 | 국지 도로 | 110 | 소로1-10 (오천동 341-9) | 중로2-34 (오천동 350-7) | 일반 도로 | - | 여수시고시 제2023-372호 ('23. 8.24.) | - |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 변경전 도로명 | 변경후 도로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
| 소로 3-1218 | 소로 3-1218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형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110m, B=6m → L=110m, B=6~7m 면적변경: 676㎡ → 713㎡ - 절대값 변경 165㎡(증 101㎡, 감 64㎡)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측량 및 실시설계 결과 반영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증감 합계 절대값 면적 5% 이상 변경) |

2. 열람기간: 2026. 2.27. ~ 2026. 3.13.(14일간)

3. 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 여수시청 도시계획과(본청 1층)

4. 관계도서: 게재생략(열람장소에 비치)

5. 기타사항: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안) 세부내용은 열람장소에 비치하고 있으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도시계획과(☎061-659-40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문도항 제2삼호교 건설공사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서 추진 중인 “거문도항 제2삼호교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은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2. 26.

여 수 시 장

1. 사업의 개요

○ 사업기간(예정): 2026년 ~ 2028년

| 사업의 종류 및 명칭(사업명) | 사업예정지(위치) | 사업내용 | 사업시행자의 명칭(성명) 및 주소 |
|------------------|---------------------------|--|---|
| 거문도항 제2삼호교 건설공사 | 전라남도 여수시 삼산면 덕촌리 ~ 거문리 일원 | ○ 면적 및 규모 - 면적 10,369㎡ - 규모: L= 480m B= 9.75~10.75m | 해양수산부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전라남도 여수시 여서1로 107 |

2. 공람장소, 공람기간

| 사업명 | 공람장소 | 공람기간 |
|-----------------|-------------------------------|------------------------------------|
| 거문도항 제2삼호교 건설공사 |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여수시 도시계획과 | 2026. 2. 26. ~2026. 3. 13.(15일) |

3. 주민 등 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2026. 2. 26. ~ 2026. 3. 13.(15일)
- 제출방법: 열람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따라 의견서 제출

4. 편입토지조서: 붙임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61-650-6151), 여수시 도시계획과(☎061-659-40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일련 번호 | 소재지 | 지번 | 지목 | 지 적 (㎡) | 편입면적 (㎡) | 소유자 | | 관계인 | | | 비고 |
|----------|-----|---------|----|------------|-------------|------------|---|--------------|--|----------|----|
| | | | | | | 성명 | 주소 | 성명 | 주소 | 권리 관계 | |
| 1 | 덕촌리 | 390-4 | 대 | 197 | 4 | 박** | 전라남도 여수시 삼산면 거문도등대길 * | | | | |
| 2 | 덕촌리 | 390 | 전 | 220 | 3 | 박** | 전라남도 여수시 삼산면 거문도등대길 * | | | | |
| 3 | 덕촌리 | 389-1 | 임 | 2 | 2 | 공 | 여수시 | | | | |
| 4 | 덕촌리 | 390-2 | 전 | 62 | 47 | 국 | 국토교통부 | | | | |
| 5 | 덕촌리 | 390-3 | 전 | 16 | 16 | 공 | 여수시 | | | | |
| 6 | 덕촌리 | 산190-44 | 임 | 888 | 23 | 국 | 국토교통부 | | | | |
| 7 | 덕촌리 | 산190-45 | 임 | 974 | 33 | 김** | 전라남도 여수시 삼산면 덕촌리 *** | | | | |
| 8 | 덕촌리 | 388-1 | 전 | 84 | 26 | 국 | 국토교통부 | | | | |
| 9 | 덕촌리 | 산190-46 | 임 | 683 | 417 | 국 | 국토교통부 | | | | |
| 10 | 덕촌리 | 389 | 임 | 87 | 87 | 최** | 여수시 삼산면 덕촌리 *** | | | | |
| 11 | 덕촌리 | 산190-17 | 임 | 5,867 | 1,479 | 주**** * | 전라남도 여수시 학동 **~** | | | | |
| 12 | 덕촌리 | - | 해 | | 7,427 | 국 | | | | | |
| 13 | 거문리 | 145 | 도 | 1,273 | 50 | 국 | 국토교통부 | | | | |
| 14 | 거문리 | 111-26 | 대 | 26 | 8 | 최** | 전라남도 여수시 삼산면 상호교길 ** | | | | |
| 15 | 거문리 | 111-16 | 대 | 92 | 82 | 최** | 전라남도 여수시 삼산면 거문리 ***~** | 여수농 업**** | 여수시 문수동 ***~* | 근저 당권 | |
| 16 | 거문리 | 111-15 | 대 | 25 | 3 | 최** | 전라남도 여수시 삼산면 상호교길 ** | | | | |
| 17 | 거문리 | 111-14 | 대 | 55 | 8 | 정** | 전라남도 여수시 삼산면 상호교길 ** | | | | |
| 18 | 거문리 | 111-17 | 대 | 159 | 156 | 문** |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반촌로 ***, ***동 ***호(당진롯데캐슬 아파트) | 조** | 여수시 오림*길 **, ***동 6**호(오 림동,** 아파트) | 전세 권 | |
| | | | | | | | | 총무새 마을** | 여수시 총무로 **(총무 동) | 근저 당권 | |
| 19 | 거문리 | 111-7 | 대 | 159 | 24 | 문** | 전라남도 여수시 삼산면 상호교길 **~* | | | | |
| 20 | 거문리 | 111-5 | 대 | 126 | 19 | 김** | 전라남도 여수시 삼산면 거문리 *** | 여수농 업**** | 여수시 문수동 ***~* | 근저 당권 | |
| 21 | 거문리 | 111-18 | 대 | 122 | 122 | 문** |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대호만로 **** | | | | |
| | | | | | | 최** | 전라남도 여수시 삼산면 상호교길 ** | | | | |
| 22 | 거문리 | 111-4 | 전 | 182 | 34 | 국 | 국토교통부 | | | | |

2025년도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 결과 공고

자연재난 발생 양상 변화에 따른 지자체 방재역량 제고를 위해 「자연재해 대책법」 제75조2에 따라 실시한 ‘2025년도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 결과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2. 26.

여 수 시 장

1. 평가시기 및 기관

가. 평가시기 : 최근 실적('24. 11. 1.~'25. 10. 31.) 활용하여 '25년 진단

나. 평가기관 : 행정안전부(전국 228개 시·군·구)

2. 진단지표 : 3개 분야 33개 진단지표

3. 진단 결과

| 시도 | 시군구 | 안전도지수 | 재해위험요인 | | 예방대책추진 | | 예방시설정비 | |
|----|-----|-------------|--------|----|--------|----|--------|----|
| | | | 지수 | 등급 | 지수 | 등급 | 지수 | 등급 |
| 전남 | 여수 | D (0.58) | 0.49 | E | 0.61 | D | 0.61 | D |

※ 진단구분: A(15%), B(20%), C(30%), D(20%), E(15%)

4. 진단 결과의 활용

가. 피해복구비 국가 추가지원을 가감

나. 소방안전교부세 산정기준 활용

전문건설업 폐업 공고

전문건설업 폐업신고에 따라 신고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2 (건설업의 폐업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3(건설업등록말소의 공고)에 따라 폐업 처리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26일

여 수 시 장

1. 폐업대상 업체

| 상 호 | 영업 소재지 | 폐업대상 건설 업종 (등록번호) | 법인번호 (주민번호) | 폐업일자 | 폐업사유 |
|-----------------------|---------------------|--------------------------|----------------|------------|------|
| (유)진남개발 (박○채, 박○현) | 전남 여수시 여수산단2로 21 | 철강구조물공사업 (전남94-21-06) | 206214-0000281 | 2026.2.26. | 사업포기 |

2. 공고 기간: 2026. 2. 26. ~ 2026. 3. 12.(14일)

3. 공고 장소: 여수시 홈페이지 및 시보

4. 기타

본 신고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0조의3(건설업 등록말소의 공고)에 따라 건설산업정보시스템(<http://www.kiscon.net>)에 공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도 공공산림가꾸기(숲가꾸기패트롤) 기간제근로자 채용(2차) 최종합격자 공고

2026년도 공공산림가꾸기(숲가꾸기패트롤) 기간제근로자 채용(2차)에 따른 최종합격자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26일

여 수 시 장

1 최종합격자 : 1명

가. 숲가꾸기패트롤 응시번호-1

2 신규채용 등록

가. 등록일시: 2026. 3. 4.(수) 9:30

나. 등록장소: 여수시 여천체육공원길 49(망마경기장) 산림과

다. 구비서류: 신분증, 본인도장, 통장사본

3 등록 시 유의사항

가.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구비하여 지정된 기일에 차질 없이 등록하여야 함.

나. 지정된 기일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청 산림과(산림조성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61-659-4605)

2026년 계동유원지 환경정비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

2026년 계동유원지 환경정비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및 채용 등록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26일

돌 산 읍 장

1 최종합격자 명단 : 1명

- 응시번호 : 1

2 신규채용 등록

- 등록일시 : 2026. 3. 3.(화) 18:00까지
- 등 록 처 : 돌산읍사무소 개발팀(돌산읍 돌산로 1253-6)

3 등록 시 유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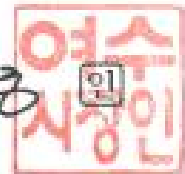
-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구비하여 지정된 기일에 차질 없이 등록하여야 함.
- 지정된 기일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됨.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돌산읍(개발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61-659-1030)

제253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6년 2월 27일

여수시장 *김기영*



여수시 조례 제2278호

붙임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및 제5조를 각각 제5조 및 제4조로 한다.

제4조(종전의 제5조)의 제목“(적용범위)”를“(적용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호 중 “「지방자치법」 제130조”를 “「지방자치법」 제130조”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후단 중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관장하는”을 “맡아 처리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5항) 중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청년의 정책 참여 보장) ① 시장은 청년의 정책 참여 보장을 위해 개별 위원회를 구성시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1 이상을 청년위원으로 위촉하도록 노력하며, 청년은 「여수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의 사람을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청년정책을 다루는 위원회는 청년위원을 10분의 3 이상 위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여수시 청년 기본 조례」 제8조 청년정책위원회
 2. 「여수시 청년 기본 조례」 제12조에 따른 청년정책 사업 등과 관련된 위원회
 3. 그 밖에 시장이 청년위원의 정책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 제8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로 하고,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와 배우자였던 자 및 직계 존·비속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되기 전에 해당 사안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사항
5.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6.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안건의 심의 전에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해야 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등)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위원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시장은 동일인이 3개를 초과하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중복 위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연임 제한 및 제3항의 중복 위촉 제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시 공무원 또는 여수시의회 의원
2. 특수전문분야 전문가
3. 여성위원
4. 특정한 안건에 대한 심사·심의·의결 등을 마친 후 해산되는 위원회의 위원

제11조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3조(중전의 제11조)제2항 중 “위원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을 “위원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한다.

제14조(중전의 제12조)제4항 중 “제5조제1항제2호”를

“제4조제1항제2호”로, “통·폐합여부”를 “통·폐합 여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

2. ~ 4. (생략)

② (생략)

③ 시장은 공개모집에 의해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 중 당해 위원회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동일인이 3개를 초과하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중복 위촉되거나 동일 위원회에서 3회 이상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시 공무원, 여수시의회 의원, 특수전문분야 전문가, 여성위원을 위촉하거나 특정한 안건에 대해 심사·심의·의결 등을 마친 후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2항의 공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5일 이상으로 한다.

<신 설>

--

2.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 해당 -----

-----.

<삭 제>

⑤ -----
----- 없으면 -----
-----.

제6조의2(청년의 정책 참여 보장) ①

시장은 청년의 정책 참여 보장을 위해 개별 위원회를 구성시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1 이상을 청년위원으로 위촉하도록 노력하며, 청년은

<신 설>

「여수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 제1호의 사람을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청년정책을 다루는 위원회는 청년위원을 10분의 3 이상 위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여수시 청년 기본 조례」 제8조 청년정책위원회

2. 「여수시 청년 기본 조례」 제12조에 따른 청년정책 사업 등과 관련된 위원회

3. 그 밖에 시장이 청년위원의 정책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와 배우자였던 자 및 직계 존·비속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되기 전에 해당 사안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사항

5.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6.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안건의 심의 전에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해야 한다.

<신 설>

제9조(위원의 임기 등)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위원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시장은 동일인이 3개를 초과하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중복 위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연임 제한 및 제3항의 중복 위촉 제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시 공무원 또는 여수시의회의원
2. 특수전문분야 전문가
3. 여성위원
4. 특정한 안건에 대한 심사·심의·의결 등을 마친 후 해산되는 위원회의 위원

제8조 (생략)

제9조 위원회의 위원은 당해 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한 용역·공사 등에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으며, 해당 용역·공사 등의 대상 및 범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 (현행 제8조와 같음)

제11조 ----- 해당 -----

--.

제10조(위원회의 운영 등) (생략)

제11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① (생략)

② 위원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의 주요내용과 결과 등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회 관리 및 정비) ① ~ ③ (생략)

④ 제3항의 평가결과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어 그 존치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 관련 법령이나 지침이 개정될 수 있도록 상급기관에 건의하는 등 노력하여야 하며,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위원회는 관련 자치법규의 정비나 위원회의 통·폐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3조·제14조 (생략)

제12조(위원회의 운영 등) (현행 제10조와 같음)

제13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① (현행 제11조와 같음)

② 위원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 없으면 -----

-----.

제14조(위원회 관리 및 정비) ① ~ ③ (현행 제12조와 같음)

④ -----

----- 제4조제1항제2호-----

----- 통·폐합 여부-----
-----.

제15조·제16조 (현행 제13조 및 제14조와 같음)

제253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6년 2월 27 일

여 수 시 장 김경민



여수시 조례 제2279호

붙임 여수시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여수시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여수시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지역균형발전”으로, “제27조 및 제29조”를 “제40조”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법 제28조제2항”을 “특별법 제40조제3항”으로 한다.

제14조제2항제4호 중 “주민참여예산”을 “예산(주민참여예산, 주민세 환원)”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6호 중 “주민참여예산”을 “예산(주민참여예산, 주민세 환원)”으로 한다.

제17조 중 “특별법 제29조제2항”을 “특별법 제40조제5항”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제4호 중 “특별법 제29조제2항”을 “특별법 제40조제5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4조제2항제4호 및 제15조제1항제6호의 개정 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의 풀뿌리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에 따라 여수시 읍·면·동에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읍·면·동 주민자치회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주민자치회”란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주민의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해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7조 및 제29조에 따라 읍·면·동에 시범적으로 설치되고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p> | <p>제1조(목적) ----- -----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 ----- ----- ----- ----- -----.</p> <p>제2조(정의) ----- -----.</p> <p>1. ----- ----- ----- <u>지역균형발전</u>----- ----- <u>제40조</u>----- ----- ----- ----- -----.</p> |

2. ~ 4. (생략)

제5조(기능) 주민자치회는 특별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 3. (생략)

제14조 (주민총회) ① (생략)

②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며, 제1항에 따라 상정된 안건은 참석 주민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1. ~ 3. (생략)

4. 읍·면·동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안

5. (생략)

③ ~ ⑦ (생략)

제15조 (마을계획의 구성 등)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다음 각 호의 세부계획으로 구성된 마을계획안을 수립한다.

1. ~ 5. (생략)

6. 읍·면·동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안

2. ~ 4. (현행과 같음)

제5조(기능) ----- 특별법 제40조제3항-----
-----.

1. ~ 3. (현행과 같음)

제14조 (주민총회)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3. (현행과 같음)

4. ----- 예산(주민참여예산, 주민세 환원)---

5. (현행과 같음)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15조 (마을계획의 구성 등) ① -----

-----.

1. ~ 5. (현행과 같음)

6. ----- 예산(주민참여예산, 주민세 환원)---

7. (생략)

② ~ ④ (생략)

제17조(정치적 중립)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가지며,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20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 해촉이 된 것으로 보며,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 주민자치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 3. (생략)

4.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권한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6. (생략)

② (생략)

--

7.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7조(정치적 중립) -----
----- 특별법 제40조제5항-

-----.

제20조(위원의 해촉) ① -----

-----.

1. ~ 3. (현행과 같음)

4. 특별법 제40조제5항-----

5. 6. (현행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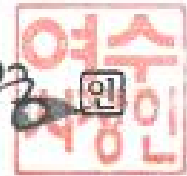
② (현행과 같음)

제253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6년 2 월 27 일

여 수 시 장

김기영



여수시 조례 제2280호

붙임 여수시 공유재산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여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여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4호제3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34조제2항 중 “100만원”을 “50만원”으로, “6회”를 “12회”로 한다.

제37호제1항제5호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58조제1항1호 중 “100만원”을 “50만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 ~ ③ (생 략)</p> <p>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p> <p>1. 2. (생 략)</p> <p>3. 「<u>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u>」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운영자가 대부하는 경우</p> <p>4. ~ 8. (생 략)</p> <p>⑤ (생 략)</p> <p>제34조(대부료 등의 납부기한) ① (생 략)</p> <p>② 영 제14조제8항 및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분할납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u>100만원</u>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u>6회</u>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p> <p>③ (생 략)</p> | <p>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 ----- ----- ---</p> <p>1. 2. (현행과 같음)</p> <p>3. 「<u>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u>」 ----- ----- ----- --</p> <p>4. ~ 8. (현행과 같음)</p> <p>⑤ (현행과 같음)</p> <p>제34조(대부료 등의 납부기한)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u>50만원</u>----- ----- ----- ----- ----- ----- <u>12회</u>----- -----.</p> <p>③ (현행과 같음)</p> |

제37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 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략)
5. 시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6. (생략)

②·③ (생략)

제58조(변상금의 분할납부)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00만원 초과: 1년 4회 이내 분할 납부
- 2.·3. (생략)
- ②·③ (생략)

제37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

-----.

1. ~ 4. (현행과 같음)
5. ----- 국
가보훈부장관-----
6.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58조(변상금의 분할납부) ① --

-----.

1. 50만원 -----
- 2.·3. (현행과 같음)
- ②·③ (현행과 같음)

제253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6년 2월 27 일

여 수 시 장 김기영



여수시 조례 제2281호

붙임 여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여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여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보선된”을 “보임 또는 개선(改選)된”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상임위원회는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한 후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의장이 직권으로 본회의에 추천한다.
- ②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상임위원 선임은 해당 의원의 의견을 들어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상임위원회별로 균등하게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위원의 개선) ①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그 임기 중이라도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의장

의 추천에 따라 본회의 의결로 개선할 수 있다.

② 위원의 개선은 해당 위원, 해당 위원장 및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를 거친 후 본회의 의결로 행한다. 다만 협의 절차를 거쳤으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의장은 협의 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안건으로 부의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5조(상임위원의 임기) ① (생략)</p> <p>② <u>보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u></p> <p>제9조(위원의 선임) ① <u>상임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u></p> <p>② <u>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별로 균등하게 선임한다.</u></p> <p><신설></p> <p>③ (생략)</p> <p><신설></p> | <p>제5조(상임위원의 임기) ① (현행과 같음)</p> <p>② <u>보임 또는 개선(改選)된 -----</u> -----.</p> <p>제9조(위원의 선임) ① <u>상임위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한 후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의장이 직권으로 본회의에 추천한다.</u></p> <p>② <u>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상임위원 선임은 해당 의원의 의견을 들어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u></p> <p>③ <u>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상임위원회별로 균등하게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u></p> <p>④ (현행 제3항과 같음)</p> <p>제9조의2(위원의 개선) ① <u>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그 임기 중이라도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u></p> |

경우 의장의 추천에 따라 본회의
의결로 개선할 수 있다.

② 위원의 개선은 해당 위원, 해당
위원장 및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
를 거친 후 본회의 의결로 행한다.
다만 협의 절차를 거쳤으나 의견
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의
장은 협의 경과를 본회의에 보고
하고 이를 안건으로 부의할 수 있
다.

제253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6년 2월 27일

여수시장

김기영



여수시 조례 제2282호

붙임 여수시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부

여수시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쓰레기를 담으며 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 및 환경 운동의 지속적인 실천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쓰레기 담으며 걷기”(이하 “쓰담걷기”라 한다)란 걷거나 가볍게 뛰는 산책 등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환경 보호 활동을 말한다.
2. “쓰담걷기 주간”이란 시민이 깨끗한 자연환경과 건강한 삶을 위하여 쓰담걷기에 동참하는 주간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쓰담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쓰담걷기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쓰담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행계획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쓰담걷기 활성화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쓰담걷기 활성화를 위한 자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쓰담걷기 활성화를 위한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쓰담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쓰담걷기 활성화 사업
2. 쓰담걷기 관련 홍보 및 교육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쓰담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쓰담걷기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쓰담걷기 주간) 시장은 쓰담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쓰담걷기 주간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쓰담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8조(포상) 시장은 쓰담걷기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이나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여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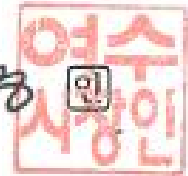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53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6년 2월 27일

여수시장

김기영



여수시 조례 제2283호

붙임 여수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 1부

여수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

여수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 여수시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채권·채무 등 모든 권리·의무는 여수시 일반회계가 이를 승계한다.

② 여수시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잉여금은 여수시 일반회계에 세입 조치한다.

제253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6년 2월 27일

여수시장 장기영



여수시 조례 제2284호

붙임 여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여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여수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13호는 다음과 같이 “30제곱미터”를 “40제곱미터”로 한다.

13.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휴게·경비시설로서 조립식 또는 컨테이너 구조로 연면적의 합계 40제곱미터 이하인 것
(지상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